

별 첨

**“소비자중심의 보험판매문화 정착” 을 위한
변액보험 제도 개선방안**

2012. 6.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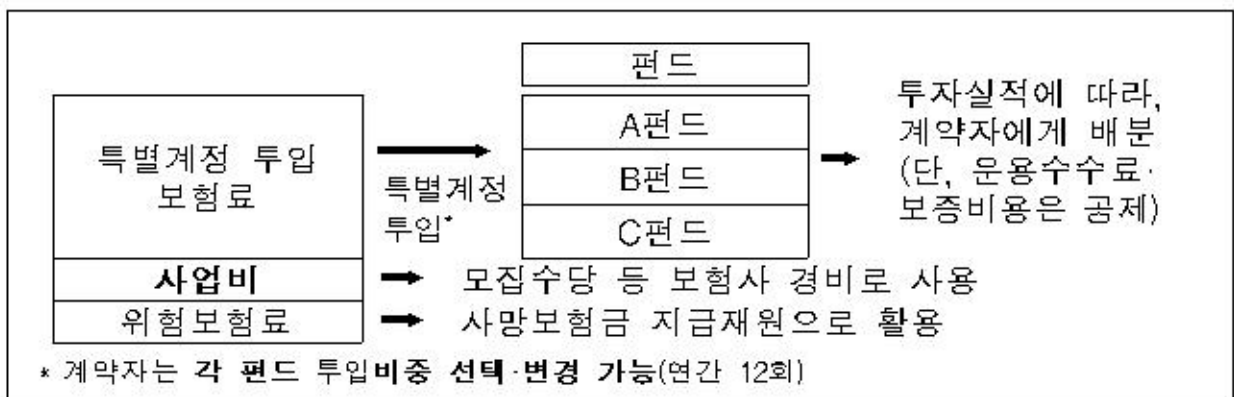


I. 검토배경	1
II. 변액보험 판매·운용시 주요 문제점	2
III. 개선방안	4
1. 소비자 중심의 공시시스템 구축	4
2. 판매시 영업행위 규제 강화	10
3. 펀드 운용수수료 체계 세분화	11
4. 계열 운용사 위탁 현황 공시	12
5. 사업비 부과방식 다양화	13
IV. 향후계획	14

I. 검토배경

- 변액보험은 보험료 중 사업비 등을 제외하고 펀드에 적립·운용하여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2001년부터 판매)
 - 사망시 또는 연금개시시점에 최소한 납입원금을 보장하는 형태로 판매
 - * 만기 전 해지시에는 원금에 미달 가능
 - 펀드와 보장기능이 결합된 상품으로 소비자는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고수익 추구가 가능하고 보험회사는 금리리스크가 없다는 특징

< 변액보험의 현금흐름(Cash Flow) >



- 시중금리 하락, 주가지수 상승 등의 영향으로 '07년까지 급격히 성장하다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 다소 둔화
 - 현재 생보사 연간 수입보험료 중 28.4%(FY11 25.2조원) 차지
 ("12.3말 현재 적립금 76.0조원(생보사 전체의 17.7%), 가입건수 816만건)
 - * 수입보험료(조원) : (FY04) 2.4 → (FY07) 20.6 → (FY10) 23.1 → (FY11) 25.2
- 최근 시민단체 발표*, 언론보도** 등을 계기로 i) 높은 사업비와 낮은 수익률, ii) 주요정보 미공개 등이 부각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보험산업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
 - * 금융소비자연맹 발표내용 : ① 변액연금상품 대부분의 수익률이 물가상승률(3.19%)에 미달, ② 일부 상품은 가입 10년후 해지하여도 원금손실 발생 가능
 - ** 주요언론 보도내용('12.4~5월) : ① 총사업비수준, 수익률 등을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움, ② 초기에 부과되는 사업비 수준이 과도

⇒ 소비자 입장에서 궁금한 정보(사업비, 수익률 등)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등 공시 및 영업행위 관련 제도개선과 시스템 구축이 시급

- 금발심 분과회의(5.9), 공개토론회(보험연구원, 5.18) 등을 통해 학계, 연구계, 언론,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 마련

Ⅱ. 변액보험 판매·운용시 주요 문제점

① 상품공시 내용이 소비자 입장에서 불충분하고 이해하기 어려움

- 생보협회*는 홈페이지에서 상품에 편입된 펀드 수익률, 상품별 (예상)해지환급금 등을 비교공시
 - * 비교공시는 협회내 보험상품공시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보험업법 §124②)
- 각 보험회사는 가입권유시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을 교부하고 가입자에게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계약자적립금, 환급금 등 공시
 -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 비중,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 소비자가 원하는 주요정보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고 있음
 - 공시내용이 복잡하고 관련용어도 어려워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고 이해하기 쉽지 않음
 - 보험회사가 가입전·후에 교부하는 설명서, 보고서 등의 종류 및 분량이 많아 소비자가 핵심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

② 판매시 상품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이 미흡

- 판매자들이 상품의 주요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고 있는 측면
 - * 변액보험 미스터리 쇼핑 결과(설계사채널) : “납입보험료 중 일부만 펀드에 투입된다는 사실”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 (만족도 : 52.2점) (금감원, '12.1월)
- 계약자가 상품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조기해지, 민원발생 등의 원인으로 작용
 - * 변액보험 관련 민원건수(금감원) : 연간 3~6천건('09~'11년) (보험업권 민원 중 8~14%)

③ 편입된 펀드의 운용수수료 부과체계가 불투명

- 보험회사는 사업비와는 별도로 펀드 운용수수료를 적립금에 비례하여 부과(약 45~76bp)
 - * 평균 운용수수료(bp) : (주식형) 76, (채권형) 45, (혼합형) 67
- 일반펀드의 운용수수료(25~68bp)보다 높은 수준
 - * 생보사 전체 변액보험 운용수수료 수익규모 : 연간 약 2,100~2,700억원 ('09~'11년)

○ 보험회사는 펀드 운용 업무 대부분을 아웃소싱*하고 있으나, 투자 일임업자 등 외부에 지급하는 보수는 16~18bp 수준

* 투자판단은 투자일임업자(자산운용사), 재산 보관·관리업무는 신탁업자,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

→ 운용수수료 배분내용이 공시되지 않고 있어 계약자는 본인이 지급한 수수료가 실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기 어려움

* 운용보수(보험회사+자산운용사)와 수탁보수(신탁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로만 구분

④ 계열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주로 운용하는 경향

○ 변액보험 펀드 운용은 법규상 보험회사가 직접할 수 없어 자산 운용사 선정이 필요

* 보험사는 운용위탁·투자결정일임·재간접투자 방식으로만 자산운용업을 영위 가능 (자본시장법 §251①, 동법 시행령 §273①)

○ 일부 보험회사는 자산운용사 선정시 계열회사에게 집중*하는 경향

* 변액보험 판매 상위 10개사의 계열사 일임비중은 63% 수준

→ 운용능력이 미흡한 계열사에게 자산운용 위탁시 계약자 자산을 관리하는 보험회사의 선관주의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

< 계열 자산운용사 평가순위(Fnguide('12.3월), 최근 3년간 실적 기준) >

투자유형(평가대상 회사수)	국내주식형(46개사)	국내채권형(23개)	국내혼합형(36개사)
A생명계열	45위	5위	27위
B생명계열	28위	17위	18위

⑤ 계약초기에 사업비를 많이 부과하여 조기해지시 소비자 손실이 큼

○ 보험료 기준으로 책정되는 사업비 대부분이 계약초기에 부과

* 일반펀드의 사업비는 대부분 적립금 기준으로 책정 → 가입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

○ 여타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판매수수료를 판매자에게 선지급하고 조기해지시 이를 공제 → 환급규모가 원금에 못 미치는 사례 발생

Ⅲ. 개선방안

< 기본 방향 >

- ◇ 변액보험의 판매·운용 관련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핵심사항 (사업비수준,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공시
⇒ 보험회사간, 보험상품간 비교가능성을 제고
- ◇ 판매자가 계약자에게 상품의 주요사항을 충실하게 설명하여 계약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에 가입하도록 영업행위 규제 강화
⇒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불만을 미연에 방지
- ◇ 사업비·운용수수료 결정 등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경쟁 촉진을 통한 보험료 인하 유도

1 소비자 중심의(consumer-friendly) 공시 시스템 구축

가. 가입 前 : 상품간 비교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현행]

- 사업비 수준, 총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 소비자가 상품 선택시 주요 비교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정보가 공시되지 않고 있음
 - * 현재 상품별 모집수수료율, 해지환급금, 각종 비용 및 수수료와 펀드별 수익률, 순자산, 운용수수료 등 항목을 비교공시
- 상품정보와 펀드정보를 각각 다른 화면에 공시하고 있으며, 상품간 특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하기 어려움
 - 관련용어도 어렵고, 세부적인 내용을 소비자 입장에서 알기 쉽도록 가공하는 과정이 없이 그대로 공시하고 있어 가독성이 떨어짐

< 현행 사업비 공시 방식 (부과목적별로 구분) >

구분	목적	시기	비용
보험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7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 6.78%(13,560원) 7년초과10년 이내: 기본보험료의 4.66%(9,320원) 10년초과: 없음
	계약관리비용	매월	납입기간 이내 : 6.75% (13,500원) 납입기간 이후 : 1.75% (3,500원)

[개선방안]

□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의 주요특징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 공시 화면초기에 “변액보험상품 비교” 메뉴를 신설

○ ‘상품별’로 사업비 수준, 사업비를 제외한 수익률(펀드 수익률)과 사업비를 포함한 (예상) 수익률* 공시

* 총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로서 기존 가입자의 수익률이 아닌 잠재 보험 계약자가 상품 가입시 예상되는 수익률을 계산기 형식으로 제공(본인이 경과기간, 예상 펀드수익률을 입력하면 자동계산되도록 프로그램化)

○ 이와 함께 초기화면에는 최저보증금액 등 7가지 핵심내용만 공시

< “변액보험상품 비교”메뉴 화면구성 (예시) >

상품 정보						펀드 정보				예상수익률 계산기				
회사명	상품명	사업비율 (보험료 대비)		위험보장비용 (보험료 대비)	펀드투입비율 (보험료 대비)		펀드명	펀드운영 수수료율 (적립금 대비)	보증비용 (적립금 대비)	펀드 수익률		○ 예상펀드수익률 선택 <input type="checkbox"/>		
		10년 이내	10년 초과	기본 사망보험금	10년 이내	10년 초과				최저 보증액	직전 6개월	직전 1년	○ 경과기간 선택 <input type="checkbox"/>	1년
A사	A변액	11%	5%	1.0%	88%	94%	a	연 0.6%	연 0.3%	3.0%	6.0%	-7.7%	17.8%	57.6%
				500만원			b	연 0.4%	만기시	2.0%	4.0%	-8.5%	7.1%	30.3%
		c	연 0.5%	납입원금	1.0%	2.0%	-10.2%	-2.8%	7.3%					

* a펀드투입비율을 100%로 설정한 계약자의 가입이후 1년 경과시점의 예상수익률

□ 사업비 수준 등 기타 정보들도 소비자 관점에서 단순화하여 제공

< 사업비 공시 방식 개선 (경과기간별) >

구 간	1~7년	8~10년	11~13년	14년 이후
사업비 비중	13.53	11.41	6.75	1.75

□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용어*는 각주 등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수익률, 해지환급률 등 제공정보의 산출근거**를 명시

* 예: 운용보수, 수탁보수, 모집수수료율, 보험료지수

** 예: 해지환급률을 공시하는 화면에 해지공제액, 해지환급금 산출식 등 명시

[기대효과]

□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상품 선택 가능

□ 사업비, 자산운용, 보장내용 등에서 보험회사간 경쟁 촉진으로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및 고객자산에 대한 성실한 운용 유도

1. 관심상품 선택 및 유의사항 안내

1. 관심상품 선택
 ▲ 상품 유형 : 연금/유니버설 ▲ 납입방식 : 일시납/월납 ▲ 회사 : 전체/○○생명
 ▲ 펀드수익률구간 선택(직전) : 1개월/3개월/6개월/9개월/1년/3년/5년/10년
2. 유의사항 안내
 ○ 변액보험은 투자성과 보장성을 동시에 가진 복합금융상품임 → 수익률, 보증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함이 바람직
 ○ 중도해지시에는 계약자 적립금이 최저보증되지 않으며, 해약환급금은 계약자 적립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해약환급금 확인 link)
 ○ 예상수익률은 가입 판단을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정보로, 기존가입자들은 각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실제수익률을 알 수 있음 (각 회사 홈페이지 link)
 ※ 선택 유형을 표시하고 유의사항을 읽었음을 확인(click)해야 다음화면으로 이동

2. 상품 공시화면 중 수익률 부분

펀드 정보		예상수익률** 계산기모형		
펀드수익률*		○ 예상펀드수익률 선택 : 직전6개월, 직전1년, 직전3년, 직전5년, 직접입력 ○ 경과기간 선택 : 1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직전 6개월	직전 1년	1년	5년	10년
30%	60%	-7.7%	17.8%	57.6%
20%	40%	-8.5%	7.1%	30.3%
10%	20%	-10.2%	-2.8%	7.3%

* 펀드수익률 : 해당기간동안 펀드 기준가격의 변화율 $\left(\frac{\text{기말기준가격} - \text{기초기준가격}}{\text{기초기준가격}} \right) \times 100$
 (일반펀드 비교공시 기준과 동일)

→ 펀드투입금액 대비 수익률 $\left(\frac{\text{계약자적립금} - \text{펀드투입금액}}{\text{펀드투입금액}} \right) \times 100$

** 예상수익률 : 상품가입 후 일정기간 경과시 총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left(\frac{\text{계약자적립금} - \text{총납입보험료}}{\text{총납입보험료}} \right) \times 100$

※ 예상수익률을 내부수익률방식이 아닌 단순수익률 방식으로 공시하는 이유
 ① 내부수익률방식(IRR, 연환산수익률 개념)은 일반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② 일반펀드와 비교가능성 확보(일반펀드와 동일한 누적개념의 수익률)

※ 소비자에게 펀드수익률 등 용어의 정의, 산출식 등을 알기 쉽게 안내
 (해당 용어에 커서(cursor) 이동시 안내 창이 자동으로 열림)

나. 가입 時 : 「핵심 상품설명서」 도입

[현행]

□ 판매자들은 가입권유 단계에서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운용설명서를 계약자에게 교부

- 각 자료의 분량*이 많아 소비자가 모두 읽고 이해하기 곤란하므로 사실상 판매자의 설명에 주로 의존

* (가입설계서) 20~25쪽 (상품설명서) 15~20쪽 (운용설명서) 25~30쪽

[개선방안]

□ 계약자가 변액보험 상품의 구조 및 주요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담은 「변액보험 핵심 상품설명서」 한 장을 상품설명서 첫 page에 제시

-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안내하는 일반보험 상품의 「핵심설명서」와 달리, 변액보험 상품의 구조 및 핵심적인 특징을 안내

< 핵심설명서와 핵심상품설명서 비교 >

	핵심 상품설명서 (8쪽 참고)	핵심설명서
적용범위	변액보험상품	보험상품 일반
주요내용	① 변액보험상품 개요 ○ 상품성격(실적배당형, 장기상품), 상품구조 및 특징	① 보험계약자의 권리 ○ 청약철회권, 보험계약취소권 등
	② 보험계약 정보 ○ 보장내용,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펀드투입금 비율, 해약공제액	② 보험계약자의 의무 ○ 보험계약전 중요사항 고지의무
	③ 자산운용 정보 ○ 투자형태, 투자결과에 대한 최저보증, 최저보증비용·운용수수료 등 펀드 차감 비용	③ 가입자 유의사항 ○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 등 차감한 금액만 적립·운용, 10년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

[기대효과]

□ 변액보험상품의 핵심내용을 잠재보험계약자에게 알림으로써 적합성 원칙의 취지에 부합하고 불완전판매 방지

참고

변액연금보험 핵심 상품설명서 [예시]

I. 상품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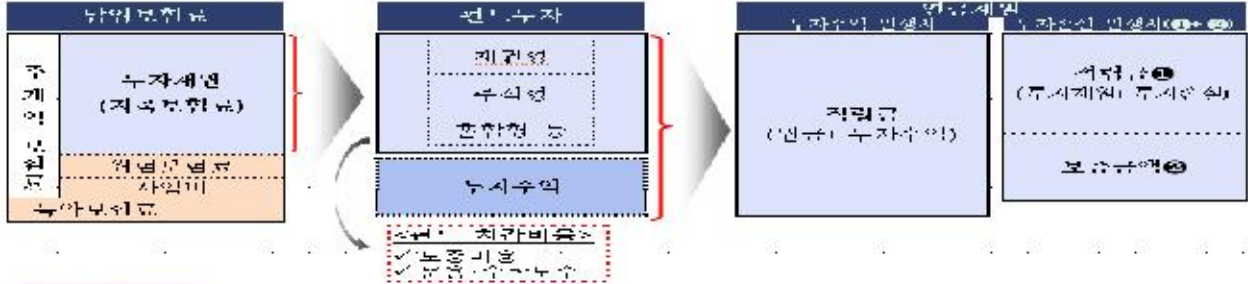
■ 장기노후생활자금 확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연금상품

■ 상품구조 및 특징

▶ 연금지급개시전 사망시 사망보험금 지급

▶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액(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연금액)이 변동 →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됨. 단, 사망시 또는 연금개시시점에는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최저보증

※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으며 가입후 10년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II. 보험계약

■ 위험보장(연금개시전) : 주계약 위험보험료 및 특약보험료를 기초로 사망 등의 위험 보장

▶ 주계약(주계약 보험료 98만원 기준) : 재해사망(1,200만원+적립금), 일반사망(600만원+적립금)

▶ 특약 : 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 재해장해특약 등을 통한 사망 및 장해보장

■ 펀드투입금액 : 납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사업비,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 예시 > 납입보험료 100만원(기본보험료 98만원, 특약보험료 2만원), 납입기간 20년

납입보험료		1~7년	8~10년	11~20년
주계약 보험료 (98만원)	투자재원 (펀드투입)	860,000~865,000 (86.0~86.5%)	870,000~875,000 (87.0~87.5%)	945,000~950,000 (94.5~95.0%)
	사업비	110,000(11.0%)	95,000(9.5%)	15,000(1.5%)
	위험보험료	5,000~10,000(0.5~1.0%)	10,000~15,000(1.0~1.5%)	15,000~20,000(1.5~2.0%)
특약보험료(2만원)		20,000(2.0%)	20,000(2.0%)	20,000(2.0%)

■ 연금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적립금(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최저 보증)을 재원으로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등 계약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연금 지급

■ 해약환급금 : 보험계약 해약시 받는 금액으로서 계약후 7년 이내 임의 해약시 적립금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함에 따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음

< 예시 > 40세남자, 주계약 보험료 98만원, 납입기간 20년, 수익률 4%, 종신형 연금(60세 개시) 선택 (단위: 만원)

경과기간	1년말	3년말	5년말	7년말	10년말	15년말	20년말	연금(월)
주계약보험료누계액	1,176	3,528	5,880	8,232	11,760	17,640	23,520	
해약환급금	687	3,044	5,542	8,190	12,350	20,471	29,936	

III. 자산운용

■ 펀드투자 : 계약자 선택에 따라 다양한 펀드에 투자(단, 연금개시후에는 적립금을 공시이율로 부리)

■ 최저보증 : 펀드운용실적과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보증(단,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 사망보험금 : 연금지급개시전 사망시 사망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보증

▶ 연금적립금 : 연금개시시점 적립금은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보증

■ 펀드 차감 비용 : 최저보증, 펀드 운용·수탁을 위한 보수를 적립금비례로 차감

▶ 최저보증 : 연 0.55% (최저연금적립금 보증 연 0.5%,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연 0.05%)

▶ 운용·수탁 : 연 0.31~1.2% (운용보수: 채권형 연 0.3~0.4%, 주식형 연 0.5~1.0%, 수탁보수 : 연 0.01~0.02%)

■ 투자옵션 : 계약자가 투자펀드 변경, 주식비중자동조정 옵션 선택 가능

핵심 상품설명서는 상품설명서의 주요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상품설명서 본문과 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 설계사 또는 대리점 ○ ○ ○ 서명 또는 인
보험계약자 □ □ □ 서명 또는 인

다. 가입 後 : 계약자에게 필요한 핵심정보를 주기적으로 통합 제공

[현행]

- 납입보험료, 적립금은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고 있으나, 사업비, 위험보험료 부과금액 등에 대해서는 공시하지 않고 있음

< 계약자 적립금 공시 내용(예시) >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A)	계약자적립금	
	금액(B)	적립률(B/A)×100
400,000	352,000	88%

- 오프라인 공시채널이 이원화*되어 있고 발송주기도 달라 계약자가 보험계약내용과 자산운용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 ① 보험계약관리내용 (반기별 발송), ② 자산운용보고서 (분기별 발송)

[개선방안]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가 어디에 쓰였고 얼마가 남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공

< 계약자 적립금 공시 내용 개선(예시) >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A)	펀드투입전 차감액		펀드투입 금액	계약자적립금	
	사업비	위험 보험료		금액(B)	적립률(B/A) ×100
400,000	50,000	4,000	346,000	352,000	88%

*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 적립률 -100 (예 : 적립률이 88%이면 수익률은 -12%)

- 이원화되어 있는 오프라인 공시채널은 “(가칭)보험계약정보”로 일원화하여 계약관리내용과 자산운용실적을 분기별로 제공

[기대효과]

- 계약내용과 자산관리현황을 계약자에게 명확히 알림으로써, 보험료 추가납입 또는 해지, 투자대상 펀드 변경 등 의사결정을 지원

2

판매시 영업행위 규제 강화

가. 사업비 등 주요정보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현행) 보험계약 체결 권유시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에 사업비와 관련된 주요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①보험료, ②보장위험 및 보험금, ③해약환급금, ④(변액보험)투자형태 및 구조, ⑤(변액보험)중도해지시 최저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 등 (보험업감독규정 §4-35의2)

(개선) 설명의무사항에 사업비와 관련된 주요내용 등을 추가

- * 예 : 총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 등이 차감한 일부만 특별계정에 투입된다는 내용 등

(기대효과) 소비자가 사업비 수준 등을 파악한 후 상품에 가입토록 함으로써 불완전판매 방지

나. 청약 후 모니터링 [일명 ‘해피콜(Happy Call)’] 의무화

(현행)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가 충실하게 이행되었는지를 보험회사가 확인하는 절차 미흡

○ 업계 자율적으로 해피콜이 일부 운영되고 있으나 형식적인 측면

- * 사업비 수준 등을 계약자가 설명받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음

(개선) 보험회사가 계약 승낙이전에 판매과정에서 핵심사항이 설명되었고 계약자가 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피콜)토록 의무화

- * 설명여부 확인사항(5가지) :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 등 차감 후 투자, 투자손익이 계약자에게 귀속,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님, 해약환급금 수준

(기대효과) 허위·과장 설명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험회사의 고객관리 강화

3**운용수수료 체계 세분화****[현행]**

- 운용수수료를 **운용보수**(재산 관리·운용업무 관련 보수), **수탁보수**(자산보관 및 기준가격 산정업무 관련 보수)로만 구분하여 공시
 - 운용수수료가 일정한 경우, 보험회사가 **외부에 지급하는 보수를 낮추면 보험회사의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
 - * 일반편드는 수수료 귀속주체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 공시

[개선방안]

- 운용수수료를 귀속주체에 따라 보험사의 **운영보수**와 **외부에 지급하는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

< 운용수수료 공시체계 개선(예시) >

현행	개선안	일반편드의 구분 공시 현황
운용보수	· 운영보수 (보험회사)	집합투자업자 보수
	· 투자일임보수 (자산운용사)	
수탁보수	· 수탁보수 (은행 등 신탁업자)	신탁업자 보수
	· 사무관리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 사전 공시한 보수수준보다 **실제 외부에 지급한 보수가 적어질 경우 실제 지출한 금액만 계약자에게 부과**
 - * 공시보수보다 실제 지급한 보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보험사가 초과분 부담

[기대효과]

- 소비자가 운용수수료 중 **보험회사 몫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간 경쟁에 따른 수수료 부담 경감 유도

[현행]

- 각 생보사가 특별계정 운용사로 계열사*를 선정하는 비율, 계열 운용사의 운용성과 등은 공시되지 않고 있음

* 예 :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동일 모회사의 자회사, 상호 지분관계가 있는 회사

[개선방안]

- 각 생보사별 ① 계열사 위탁비중 공시, ② 펀드 운용수익률 및 투자일임보수 수준을 계열사와 비계열사로 구분하여 공시

[기대효과]

-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계열사 위탁비중 등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일부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위탁관행 개선 유도

[현행]

- 국내 보험회사는 사업비(보험료 기준으로 부과)를 계약초기에 많이 부과
 - 보험회사간 판매조직 유치, 영업규모 확대 등 경쟁과정에서 판매 수수료를 선지급하는 관행이 형성됨에 따라 비용 조기 회수 필요
 - * 판매수수료 중 약 90%를 계약 체결후 1년 이내에 지급
 - 반면, 외국(美, 英, 日 등)의 경우 판매수수료 선지급비중*이 우리나라 보다 낮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금기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사업비 부담이 장기간 분산
 - * 판매수수료 초년도 지급비율 : (美) 25~52%, (英) 25~44%
- ⇒ 사업비 총액에 차이가 없더라도, 국내 보험상품의 초기 수익률이 외국에 비해 낮아지게 됨
- * 美, 加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국내상품의 사업비가 높지 않으나 부과 방식이 획일적으로 선취인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공개토론회, 5.18일)

[개선방향]

- 중장기적으로 현행 방식 외에 적립금 비례방식, 보험료 비례방식 이더라도 사업비를 보다 **평준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 도입 필요
 - 다만, 각 방식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정부가 특정방식을 강제 하기 보다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식을 운영함이 바람직
- 정부는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완화시키는 등 업계에서 다양한 사업비 부과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조치(12.4월)*의 정착상황과 및 설계사 보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검토
 - * 기존 판매수수료를 판매보수(70%), 유지보수(30%)로 이원화하고 판매보수에 대해서만 해지공제 인정

IV. 향후계획

- 공시 및 영업행위 규제 관련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3/4분기 중)
- 생보협회 공시기준 개정, 협회 및 각 보험회사의 공시시스템 개편, 기초서류 변경(6~8월)

추진 과제	필요 조치	완료 시기
① 알기 쉬운 공시시스템 구축 ① 가입 前 : 비교공시 체계 개선 ② 가입 時 : 「핵심상품설명서」 도입 ③ 가입 後 : 계약정보 통합 제공	· 협회 공시기준 개정 및 공시시스템 개편 · 감독규정 개정 · 협회 공시기준 개정 (시행세칙 개정) · 협회 공시기준 개정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12.8월 '12.7월 (12.9월) '12.7월 (12.9월)
② 판매시 영업행위 규제 강화 ① 설명의무 강화 ② 청약 후 모니터링 의무화	· 감독규정 개정 · 감독규정 개정	'12.9월 '12.9월
③ 운용수수료 체계 세분화	· 상품 기초서류 변경 · 협회 공시기준 개정 ·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12.8~9월
④ 계열운용사 위탁 현황 공시	· 협회 공시기준 개정	'12.7월
⑤ 사업비 부과방식 다양화	· 판매수수료 체계개편 정착상황 모니터링	지속추진

참고1

변액보험 주요 통계

< 수입보험료 · 적립금 추이(조원) >

구분	FY04		FY07		FY10		FY11	
	보험료	적립금	보험료	적립금	보험료	적립금	보험료	적립금
전체	2.4	2.9	20.6	34.1	23.1	68.3	25.2	76.0
(1) 변액종신	1.0	1.2	0.8	2.0	0.8	3.4	0.8	4.3
(2) 변액연금	1.4	1.7	9.1	14.9	11.3	32.9	12.4	37.9
(3) 변액유니버설	-	-	9.6	15.3	9.9	28.0	10.8	29.4
가. 보장성	-	-	1.3	1.6	3.2	5.6	4.2	7.6
나. 저축성	-	-	8.3	13.7	6.7	22.3	6.6	21.8
(4) 기타 (변액CI 등)	-	-	1.2	1.9	1.2	4.0	1.1	4.5

주)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일반+특별계정 실적

< 계약건수 추이(만건) >

구분	FY07		FY08		FY09		FY10		FY11	
	신규	누적	신규	누적	신규	누적	신규	누적	신규	누적
전체	233	574	188	633	165	676	182	734	199	816
(1) 변액종신	10	55	7	55	5	54	8	57	9	60
(2) 변액연금	80	157	67	183	72	217	73	247	78	281
(3) 변액유니버설	128	271	105	308	83	322	97	349	109	395
가. 보장성	41	88	51	116	57	145	62	180	73	223
나. 저축성	87	183	54	192	26	177	35	169	36	172
(4) 기타 (변액CI 등)	16	91	9	88	5	83	4	81	4	80

주)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일반+특별계정 실적

참고2 공개토론회·언론 등에서 제기된 내용 반영 결과

*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서비스분과회의(5.9), 공개토론회(5.18) 논의 내용 및 주요언론 (4~5월) 지적사항

구분	분야	주요내용	비고 (대책 반영여부)
금별심 · 공개 토론회 · 소비자 단체 등	공시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공시	반영
		○소비자가 임의로 선택한 펀드수익률을 전제로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을 계산하여 제시	반영
		○수익률과 함께 보장기능도 함께 강조하여 공시	반영
	영업 행위	○판매시 영업행위 규제(설명 의무 등)를 강화	반영
	사업비	○사업비 부과 구조 다양화(판매수수료 분금)	지속추진
		○보험사의 사업비 과다 → 사업비 상한 제한 등 규제 강화	일부반영 ¹⁾
언론	공시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공시	반영
		○상품의 장·단점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	반영
		○공시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강화 (공시정보까지 접근하는 단계 축소)	반영
		○각종 비용을 실제 부과한 금액으로 공시 (현재는 보험료 또는 적립금 대비 %로 공시)	반영
		○상품 판매량 공시(베스트셀러상품 정보 제공)	추후검토
	영업 행위	○판매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사업비 등)도 반드시 설명	반영
		○설명 소홀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 강화	반영
		○상품이해도가 떨어지는 고객에 대한 판매 제한	반영 ²⁾
		○보험모집인 정착률 향상, 전문성 강화	기 조치 ³⁾
	사업비	○사업비 부과 구조 다양화(판매수수료 분금)	지속추진
		○사업비 수준에 대한 규제 강화	일부반영 ¹⁾

- 1) 사업비 공시강화로 시장경쟁에 의한 사업비 인하 유도
- 2) 설명의무 강화, 보험회사의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 등
- 3)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조치 시행(4.1)